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발명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○○○ (지식재산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직무발명보상 우수 인증기업의 재인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인증 유효기간을 주요 인증제도 수준인 4년으로 확대하고,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조정전담변호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4. 16. ~ 5. 2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6제4항 중 “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”을 “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”으로 한다.

제2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위원회는 분쟁 조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조정전담변호사를 둘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의6(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) ① ~ ③ (생 략)	제6조의6(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 음)
④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2 년으로 한다.	④ -----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4 년-----.
⑤ ~ ⑧ (생 략)	⑤ ~ ⑧ (현행과 같음)
제21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⑤ (생 략)	제21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⑥ 위원회는 분쟁 조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 무국에 조정전담변호사를 둘 수 있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과	
연 락 처	(042) 481 - 5920